2024. 3. 14.(목) 10:00
제3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46호

2. **발 의 일**: 2024년 2월 27일

3. **발 의 자**: 신동윤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집행기관의 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일부 규정에 대한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조례 운영을 빈틈없이 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제3조)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9조)

○ 증인의 보호, 감사 또는 조사의 공개, 의원의 제척과 회피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9조의4, 제11조, 제12조)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7. **검토의견**

○ 달성군의회는 달성군청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제출 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2024년 7월 1일자로 설치·운영될 상임위원회를 감사주체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감시·견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고, 법령문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 온 한자어나 옛말 투는 일상에서 쓰는 쉽고 간결한 용어나 표현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로,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를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를 “감사계획서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본회의는”을 “본회의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장 이”를 “ “의장” 이”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를 “때는 바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 를 행할”을 “한다)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를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바로”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를 “때는 제2항의 조사발의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실시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본회의는”을 “본회의에서”로, “반려하여야 한다”를 “반려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승인된 때에”를 “승인될 때”로,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4조 중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로, “보조를”을 “도움을”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본회의가”를 “본회의에서”로, “의결하는 경우에”를 “의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할 때는”으로, “조사함에 있어서”를 “조사하면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되는”을 “처리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본회의는”을 “본회의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조사위원회는”을 “조사 해당위원회에서”로, “필요한 때에는 그”를 “필요할 때는”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경우에 있어”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 이에 응할”을 “단,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이 이에 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조사위원회”를 “조사 해당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 중 “조사위원회위원장”을 “조사 해당위원회위원장”으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증인으로 하여금”을 “증인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소리내어 읽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할 때는”으로 한다.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하며 선서서에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하고, 선서는 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응하지 아니한다”를 “동의하지 않는다”로, “때에는 본회의”를 “때는 본회의나”로, “조사위원회”를 “조사 해당위원회”로, “금지시키거”를 “금지하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할”을 “내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제9조의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거부한 경우에는”을 “거부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9조의6제1항 중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을 “사람을 고발할 때”로 한다.

제11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공정을 기할”을 “공정하게 할”로, “사안에 한하여”를 “사안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위원회”를 “조사 해당위원회”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를 “사안에만 본회의나”로, “조사위원회”를 “조사 해당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를 “감사”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지체없이”를 “바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를 “이송받은 사항을 바로”로 한다.

제1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조사위원회”를 “조사 해당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하는 ----------.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단서 신설>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 감사계획서를 따른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적어야 -------.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④ 본회의에서 ----------.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의장"이---------- 때는 바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를 행할 수 있다.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 한다)를 할 ---------.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적어 ----------.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 바로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때는 제2항의 조사발의로 ----------.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	⑤ ---------- 적은

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 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에서 ----------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 승인될 때---------- 통보------.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사무보조자)** ----------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 도움을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5. ----------. --- 본회의에서 ---- 의결할 때 ----------.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②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해당할 때는 ---------- 조사하면서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② ---------- 처리하는 ----------.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에서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조사 해당위원회에서 ---------- 필요할 때는 ----------. -- 경우 ----------

록 하여야 한다. 단,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이 이에 따를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따라야 ---------- 조사 해당위원회----------.
제9조의2(증언요구 및 선서)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2(증언요구 및 선서)** ---------- 조사 해당위원회위원장---------- 때는 ----------.
제9조의3(증인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 선서서에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하고,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3(증인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하며 선서서에는「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하고, 선서는 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및 위원장은 증인으로	② ---------- 증인에게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 ----------소리내어 읽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할 때는 ----------.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동의하지 않는다---------- 때는 본회의나 ---------- 조사 해당위원회 ---------- 금지하거----------.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 ---------- 내줄 -------.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에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③ ---------- 사람에게----------
제9조의5(과태료 부과 징수) ① 제9조의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	**제9조의5(과태료 부과 징수)** ① 제9조제1항----------

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거부하면 ----------.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의6(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제9조의6(고발의 절차)** ① ---------- 사람을 고발할 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 공정하게 할 ---------- 사안에만 ----------.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② ---------- 조사 해당위원회---------- 때는 ---------- 해당 ----------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 사안에만 본회의나 ---------- 조사 해당위원회----------.
제13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의의무)** ① ---------- 때는 ---------- 않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 위원장---------- 바로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적고 ----------붙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② ----------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 시정이 필요한 ---------- 때는 ---------- --------.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이송받은 사항을 바로 ----------.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따른 ----------.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조사해당위원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2023.3.21. 일부 개정, 2023.9.22. 시행)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 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 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 수산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 · 늪지 · 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 · 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 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 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 · 군도(郡道) · 구도(區道)의 신설 · 개선 · 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 등록 · 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 · 행사 · 대회의 유치 · 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4. 일부 개정·시행)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55호

2. **발 의 일**: 2024년 3월 5일

3. **발 의 자**: 김은영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23.12.14 일부개정・시행) 별표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를 근거로 구성・운영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의정활동비 상향 심의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월 1,100,000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 월 1,500,000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확대(별표 1)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의정비심의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의 정 활 동 비
월 1,5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의 정 활 동 비 월 1,1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의 정 활 동 비 월 1,5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시행)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4. 일부개정 · 시행)

제33조(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54호

2. **발 의 일**: 2024년 2월 27일

3. **발 의 자**: 전홍배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와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위원회 운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청원서의 제출과 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5조)
○ 청원서 접수에 따른 회부와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0조)
○ 청원의 심사보고 및 처리보고, 이송과 통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3조)
○ 청원의 철회 및 효력에 관한 사항 규정(제14조~제15조)
○ 청원 심사에 관한 징계 및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제16조~제17조)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청원법」, 「국회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7.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2024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달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원인이 다수일 경우 청원대표자를 지정한 후 연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원서에는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등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접수 또는 처리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원법」제6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제12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에 따라 접수 또는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하거나 처리할 위원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할 수 있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중간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

나, 공정하게 심사ㆍ의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의결로써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때는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4.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5.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한 경우

6.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원을 본회의가 처리한 경우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개철회서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①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할 경우에는 소개 철회 사유를 적은 소개철회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이 접수되면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건 명		
청원의 취지 및 이유		
소개의견		

년 월 일

소개의원 (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원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건 명		
청원제출일자		
철회요구사유		

년 월 일

청원인 (서명)

소개의원 (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4. 일부 개정·시행)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청원법(법률)」(2020.12.12. 전부개정, 2022.12.23. 시행)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 · 수사 · 재판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 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국회법(법률)」(2023.7.11. 일부개정, 2024.1.12. 시행)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11.>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7. 11.>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 · 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7. 11.>

[전문개정 2018. 4. 1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56호

2. 발 의 일: 2024년 3월 5일

3. 발 의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 규정 신설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6조제3항)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안 제8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시간선택임기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완화(별표 5의3)

○ 응시원서상 용어 정비(탈모→모자를 쓰지 않은)(별지 제1・2호서식)

6.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규정 신설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주요개정내용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면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 (안 제6조제3항)
7급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	▸7급 이상 : 만20세 이상 ▸8급 이하 : 만18세 이상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신설)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를 설치 (안 15조의2) =>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 일부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의 요건으로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규정	▸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졸업자등)'**로 수정 ※ 별표 5의3 개정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근무 경력은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하나, 조문 문구 불분명	▸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별표 5의3 개정
	▸ 3호 경채(경력)뿐만 아니라, 9호 경채(학위)시에도 관리자 근무 경력을 응시 요건으로 규정	▸ 9호 경채**(학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 별표 5의3 개정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	▸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의 의미로 응시원서 사진 부착란에 '탈모' 용어 사용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5의3 제2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라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졸업한"을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으로 하고, 같은 표 한시임기제의 6호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졸업 후"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로 하며, 같은 란의 7호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졸업 후"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로 하고, 같은 란의 8호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졸업 후"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을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별표 5의3 제3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라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란의 마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표 한시임기제의 9호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탈모"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 상반신 · 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 · 7급 : 7천원, 8 · 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 · 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 · 7급 : 7천원, 8 · 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응시수수료) ① · ② (생 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 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연령) ---------- 18세 이상이어야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삭 제>
<신 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

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일반직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준임산부"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하여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일반직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준임산부"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하여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일반직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준임산부"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하여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2023.12.5. 일부개정, 2024.1.1. 시행)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 · 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35조(응시수수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① 소속 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2023.6.13. 일부개정·시행)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 · 방법 ·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번호: 제2459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본 예산 편성 후 조정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을 반영하여,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회복하고자 함.

5. 추가경정예산 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965,758	872,788	92,970
일 반 회 계		961,000	872,000	89,000
특 별 회 계		4,758	788	3,97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59	77	782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900	0	2,900
	의료급여기금	999	711	288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백만 원)

구분	장 관 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총 계		965,758	872,788	92,970	10.65
일반회계	계	961,000	872,000	89,000	10.21
	지방세수입	220,793	220,793	0	0.00
	세외수입	41,734	40,759	975	2.39
	경상적세외수입	25,938	25,569	369	1.44
	임시적세외수입	9,433	8,828	605	6.8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362	6,362	1	0.01
	지방교부세	208,277	149,500	58,777	39.32
	조정교부금등	30,000	30,000	0	0.00
	보조금	434,850	414,395	20,454	4.94
	국고보조금등	313,794	290,831	22,964	7.90
	시도비보조금등	121,055	123,565	△2,509	△2.0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346	16,552	8,793	53.13
특별회계	계	4,758	788	3,970	503.76
	세외수입	114	31	83	263.99
	경상적 세외수입	3	2	1	35.58
	임시적 세외수입	111	29	82	280.47
	보조금	1,722	711	1,011	142.17
	국고보조금등	1,550	584	965	165.18
	시도비보조금등	173	127	46	36.1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22	46	2,876	6317.34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능별

(단위: 백만 원)

구분	분 야 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총 계		965,758	872,788	92,970	10.65
일반회계	계	961,000	872,000	89,000	10.21
	일반공공행정	51,171	45,748	5,423	11.85
	공공질서및안전	6,808	6,670	138	2.07
	교육	15,444	13,726	1,718	12.52
	문화및관광	77,901	43,754	34,147	78.04
	환경	27,654	27,464	190	0.69
	사회복지	429,826	413,516	16,310	3.94
	보건	26,509	27,203	△694	△2.55
	농림해양수산	62,202	54,922	7,280	13.2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395	5,543	852	15.38
	교통및물류	82,346	61,053	21,294	34.88
	국토 및 지역개발	50,422	44,701	5,721	12.80
	예비비	10,135	14,309	△4,174	△29.17
	기타	114,186	113,392	794	0.70
특별회계	계	4,758	788	3,970	503.76
	환경	2,900	0	2,900	순증
	사회복지	863	634	229	36.1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40	58	782	1357.64
	국토 및 지역개발	20	20	0	0.00
	기타	136	77	59	76.62

● 조직별

(단위: 백만 원)

구분	분야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총 계		965,758	872,788	92,970	10.65
일반회계	계	961,000	872,000	89,000	10.21
	본청	873,945	785,412	88,533	11.27
	기획예산실	32,746	36,249	△3,503	△9.66
	법무감사실	377	377	0	0.00
	정책추진단	14,462	5,055	9,407	186.08
	자치행정국	88,744	84,492	4,252	5.03
	자치행정과	71,327	70,620	707	1.00
	세무과	643	508	136	26.76
	징수과	672	503	169	33.60
	회계과	7,550	4,657	2,892	62.10
	종합민원과	796	775	21	2.71
	정보통신과	7,756	7,429	327	4.40
	경제환경국	88,390	77,853	10,537	13.53
	일자리경제과	8,708	8,114	593	7.31
	교통과	25,704	18,581	7,123	38.34
	환경과	3,549	3,520	29	0.84
	농업정책과	24,562	21,930	2,631	12.00
	청소위생과	25,867	25,708	159	0.62
	교육복지국	445,834	427,586	18,249	4.27
	교육정책과	130,668	129,528	1,139	0.88
	복지정책과	163,224	150,189	13,035	8.68
	생활보장과	65,914	65,205	709	1.09
	희망지원과	86,028	82,663	3,365	4.07

구분	분야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104,728	83,369	21,359	25.62
	건설과	57,217	42,916	14,301	33.32
	안전총괄과	20,155	17,083	3,072	17.98
	도시계획과	6,927	6,487	441	6.79
	도시정비과	16,953	13,469	3,484	25.87
	건축과	1,351	1,330	21	1.58
	공공시설과	104	68	36	53.52
	토지정보과	2,021	2,017	4	0.22
	문화관광국	98,664	70,431	28,232	40.08
	문화예술과	33,222	14,624	18,598	127.18
	체육진흥과	20,134	16,584	3,550	21.41
	관광과	10,590	7,807	2,783	35.65
	공원녹지과	34,717	31,416	3,301	10.51
	직속기관	42,939	43,234	△294	△0.68
	보건소	32,679	33,176	△497	△1.50
	보건과	16,695	16,663	32	0.19
	건강증진과	15,984	16,513	△529	△3.20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	10,260	10,058	203	2.01
	의회	3,230	3,053	177	5.81
	의회사무국	3,230	3,053	177	5.81
	읍면동	40,886	40,302	584	1.45
	화원읍	6,055	6,038	18	0.29
	논공읍	4,782	4,703	79	1.67
	다사읍	6,931	6,838	92	1.35
	유가읍	4,537	4,490	46	1.03
	옥포읍	4,522	4,463	59	1.31
	현풍읍	4,013	3,959	54	1.37
	가창면	3,321	3,281	40	1.23
	하빈면	2,797	2,660	137	5.16
	구지면	3,928	3,870	58	1.51

구분	분야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특별회계	계	4,758	788	3,970	503.76
	본청	4,758	788	3,970	503.76
	경제환경국	3,740	58	3,682	6392.36
	일자리경제과	840	58	782	1357.64
	청소위생과	2,900	0	2,900	순증
	교육복지국	999	711	288	40.52
	생활보장과	999	711	288	40.52
	건설도시국	20	20	0	0.00
	안전총괄과	20	20	0	0.00

● 성질별

(단위: 백만 원)

구분	분야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총 계		965,758	872,788	92,970	10.65
일반회계	계	961,000	872,000	89,000	10.21
	인건비	104,102	103,327	775	0.75
	물건비	43,169	40,958	2,211	5.40
	경상이전	576,129	555,586	20,543	3.70
	자본지출	223,937	154,551	69,386	44.89
	시설비및부대비	201,582	133,060	68,522	51.50
	민간자본이전	12,625	12,989	△363	△2.8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860	4,066	794	19.5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628	565	62	11.00
	자산취득비	4,242	3,871	371	9.57
	보전재원	1,150	1,150	0	0.00
	내부거래	2,037	2,037	0	0.00
	기금전출금	2,037	2,037	0	0.00
	예비비및기타	10,476	14,391	△3,915	△27.20
	예비비	10,135	14,309	△4,174	△29.17
	반환금기타	341	81	260	318.66
특별회계	계	4,758	788	3,970	503.76
	물건비	20	20	0	0.00
	경상이전	3,743	614	3,129	509.73
	자본지출	859	77	782	1011.64
	시설비및부대비	859	77	782	1011.64
	예비비및기타	136	77	59	76.62
	반환금기타	136	77	59	76.62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기획예산실	공공건축물 및 산하기관 운영방안 용역	100	0	100	
	주요 업무 및 각종 행사 홍보	168	80	88	
	군정홍보 언론광고료	225	140	85	
	군정 주요업무 TV 스팟광고	225	150	75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경영기획부)	106	0	106	
정책추진단	군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료	50	0	50	
	학교복합시설사업(화원초)	1,212	0	1,212	
	학교복합시설사업(달성중)	3,043	0	3,043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감리비	1,100	0	1,100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관리용역비	500	0	500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400	0	400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관리용역	500	0	500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1,000	0	1,000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700	0	700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700	0	700	
	전략환경영향평가	127	0	127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74	0	74	
회계과	업무용 차량 승용(전기차)	310	186	124	
	업무용 차량 승용(다목적형)	46	138	△92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회계과	공용차량 보험료	160	0	160	
	청사시설물(청소) 위탁관리	323	384	△61	
	제4주차장 포장공사	400	0	400	
	논공읍 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1,110	0	1,110	
	서재출장소 내진보강공사	200	100	100	
	서재출장소 리모델링 공사	175	0	175	
	하빈면 행정복지센터 창고·면대 사무소 개축공사	575	0	575	
	다사읍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23년 특교세)	400	0	400	
정보통신과	등산로 및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23년 특교금)	200	0	200	
	CCTV 재정비 사업	70	0	70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61	805	△145	보조
	달성산업단지 미래청년 일자리지원 프로젝트(필수지원)	171	222	△51	보조
	맞춤형 R&D기획 지원사업	65	0	65	
	경북대 모빌리티혁신센터 건축비 지원	800	0	800	
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300	0	6,300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643	0	643	
농업정책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476	0	2,476	보조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111	0	111	보조
청소위생과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	159	0	159	
교육정책과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568	6,527	△959	보조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교육정책과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889	1,028	△139	보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696	550	146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1,702	2,065	△363	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909	711	198	보조
	어린이집 급식품질개선 지원	563	655	△92	보조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	521	130	391	
	급식위생 관리지원	138	0	138	보조
	민간 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878	1,018	△140	보조
	담임교사지원비	3,061	2,972	90	보조
	기자재비(금포지구 우신미가뷰)	0	60	△60	보조
	리모델링 (금포지구 우신미가뷰)	0	100	△100	보조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	178	0	178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 설치	820	0	820	
	(재)달성교육재단 출연	2,989	2,089	900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패키지 지원 사업	93	0	93	보조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187	1,295	△108	보조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325	0	325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325	0	325	
	기초연금 지급	103,832	98,403	5,429	보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124	2,917	207	보조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복지정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3,745	3,124	621	보조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형)	6,890	2,966	3,924	보조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	716	179	537	보조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	769	485	284	보조
	시니어클럽 운영	793	735	58	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792	707	85	보조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	350	200	150	
	실버한마음 큰잔치 대회(노인의 날 기념)	95	0	95	
	매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등	52	0	52	
	하빈면 감문2리 경로당 신축	150	0	150	
	경로당 개보수 지원	400	200	200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비	1,288	1,237	51	보조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289	377	△88	보조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60	0	60	
	여성문화복지센터 성능개선 공사	857	730	127	
	여성문화복지센터 강당 음향장비설치 공사	0	115	△1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4,200	3,500	700	보조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시민행복급여)	101	50	50	보조
	자활근로사업(직접시행)	497	360	137	보조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2,701	2,623	79	보조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443	384	59	보조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1,201	1,256	△54	보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4,800	14,370	430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시비추가 운영비	177	49	128	보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매입	250	0	25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운영비)	51	0	51	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시비)	2,200	1,986	214	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0	886	△886	보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0	115	△115	보조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6,078	6,215	△137	보조
	장애수당(기초) 지급	999	946	54	보조
	장애인 의료비 지원	262	143	119	보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2,078	1,139	940	보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9,314	16,058	3,256	보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시비)	1,549	1,315	234	보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797	869	△71	보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1,064	1,009	54	보조
	아동수당지원	21,504	23,490	△1,986	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657	596	62	보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464	2,610	853	보조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희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0	465	△465	보조
	아동급식(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340	258	82	보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983	432	550	보조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373	308	66	보조
건설과	화원 본리리(인흥서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0	100	
	화원 성산리(7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0	500	
	화원 천내리(이진캐스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70	0	70	
	논공 남리 578-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100	100	
	논공 금포리 1465-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150	150	
	다사 서재리 서재초등학교 남편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0	100	
	유가 유곡1리(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0	200	
	유가 음리 367-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0	100	
	옥포 기세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	0	400	
	옥포 본리2리(옥포초교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0	50	
	옥포 강림리 180-5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	0	1,000	
	옥포 강림2리 528-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98	448	150	
	옥포 강림2리 47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2,200	1,000	1,200	
	옥포 송촌리 316-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0	500	
	옥포 간경리 75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0	200	
	옥포 김흥2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0	500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건설과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500	0	500	
	현풍 지리 82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	0	400	
	현풍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0	200	
	현풍 성하2리(마을안길)도시계획도로 개설	550	300	250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2,400	1,000	1,400	보조
	가창 냉천리(소2-새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	300	500	
	가창 주1리(마을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300	300	1,000	
	하빈 대평2리 모산(하빈로172길)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23년 특교금)	900	0	900	
	하빈 무등2리 132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	150	100	
	구지 창리 39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0	300	
	구지 창리 610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0	500	
	구지 고봉리(122-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0	10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580	380	200	
	도로영조물 배상공제 책임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250	200	50	
	논공 금포리 720번지 일원 도로정비	470	200	270	
	논공 위천리 71-1번지 일원 도로개설	400	300	100	
	논공 노이리 436-2번지(갈실) 일원 도로개설	150	50	100	
	군도 3호선(기세리 인근) 위험도로 개선사업	700	0	700	
	현풍 국도5호선~원오교간 도로확장	500	400	100	
	하빈 하산2리 540번지선(하산교회 앞) 마을안길 정비	250	0	250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건설과	하빈 동곡1리 710-1번지선 마을안길 정비공사	50	0	50	
	구지 목단리 454번지선 도로정비	450	250	200	
	구지 가천리 433번지선 마을안길확장	140	70	70	
	화원 태왕타운아파트 후문 인도개설공사	200	0	200	
	화원 구라리 1257번지 일원 인도정비공사	100	0	100	
	화원 천내리 308-3번지 일원 가각부 정비공사	200	0	200	
	현풍 지리 1258번지선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50	0	50	
안전총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공사	65	0	65	보조
	가창 단산리 538번지선 단산소하천 정비공사	850	0	850	
	유가 초곡리 596-2번지선 초곡소하천 정비공사	650	0	650	
	옥포 기세곡천(송해공원~반송2교)주변 산책로 공사	500	0	500	
	옥포 김흥리 614번지선 만수소하천 정비공사	260	0	260	
	유가 초곡리 173-3번지선 하천정비공사	200	0	200	
	현풍 오산1리 18번지선 오산소하천 정비공사	200	0	200	
	현풍 오산2리 582번지선 홑개소하천 정비공사	250	0	250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사업(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150	0	150	보조
	현풍 청춘만담거리 조성 사업	200	0	200	
도시정비과	마을하수도 전기 및 통신요금	100	50	50	
	논공 남리 582-2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100	10	90	
	옥포 김흥1리 160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00	10	90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도시정비과	하빈 하산1리 902-7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80	80	100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400	200	200	
	저수지 유지관리	300	200	100	
	화원 구라리(1259번지선) 농로개설공사	180	0	180	
	논공 금포리(2368-11번지선)농로개설공사	100	0	100	
	논공 노이리(647번지선) 농로개설공사	50	0	50	
	논공 삼리리(829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250	0	250	
	다사 이천리(587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150	0	150	
	유가 가태리(494-1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50	0	50	
	유가 쌍계리(448-1번지선) 농로개설공사	80	0	80	
	유가 양리(102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120	0	120	
	유가 양리(587번지선) 농로확장공사	120	0	120	
	현풍 원교리(103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90	0	90	
	가창 냉천리(643번지선) 농로개설공사	90	0	90	
	가창 상원리(74-1번지선) 구거정비공사	300	0	300	
	가창 옥분리(554번지선) 농로개설공사	70	0	70	
	가창 주리(585번지선)농로개설공사	250	0	250	
	가창 행정리(55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70	0	70	
	구지 가천리(622-43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350	0	350	
	구지 수리리(45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90	0	90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도시정비과	구지 오설배수장 유수지 정비공사	190	0	190	
	구지 화산리(298번지선) 농로개설공사	60	0	60	
	논공 하리(92-2번지선) 암반관정 설치공사	0	100	△100	
	매곡리 1554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100	0	100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운영비(달성100대 피아노)	300	200	100	보조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전면 보수 공사	80	0	80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300	0	300	
	화원 사문진상설야외공연장 주변 하천사면 복구공사	380	200	180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12,100	0	12,100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23년 특교세 25억 포함)	5,350	50	5,300	
	남지장사 백련암 관음전 보수 및 주변정비	450	0	450	보조
	대구 광덕사 신중도 주변정비	0	200	△200	보조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경상전출금	482	377	105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경상전출금	889	864	25	
	기타생활체육시설 경상전출금	732	580	152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	550	400	150	
	달성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1,263	863	400	
	옥포 강변 파크골프장('23년 특교금)	541	0	541	
	현풍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정비	80	0	80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잔여부지 조성	856	0	856	

부 서 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체육진흥과	논공 축구장 조명시설 교체공사	400	0	400	
	논공 군민운동장 정비공사	630	0	630	
관광과	주방조리실 바닥 보수 공사	109	22	87	
	시설관리공단(레포츠밸리)자본전출금	29	5	24	
	시설관리공단(달성화석박물관) 경상 전출금	656	0	656	
	화원 역사문화체험관 내부 인테리어 및 체험시설 설치	1,900	0	1,900	
공원녹지과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23년 특조금 7억 포함)	700	0	700	
	세천늪테마정원 시설 확충 공사	1,000	0	1,000	
	비슬산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170	20	150	
	MTB산악 자전거길 정비 사업	110	10	100	
	홍의장군 묘역 등산로 조성공사	200	0	200	
	마천산 숲길 정비	1,060	60	1,000	
	산불방지 헬기임차	900	800	100	보조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8	347	△139	보조
	둘째 자녀이상 출산축하금	1,866	2,276	△410	보조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	500	675	△175	
	기저귀 지원 및 조제분유 지원	963	868	95	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500	1,750	△250	보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17	0	117	보조
농촌지도과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지원	100	0	100	
의회사무국	의회 상임위 회의실 등 설치	420	350	70	

6.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57.6억 원으로 당초예산 8,727.9억 원보다 10.6% 증가한 929.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8,720억 원보다 890억 원이 증액되어 9,6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9억 원 대비 39.7억 원이 증액되어 47.6억 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8억 원, 지방교부세 587.8억 원, 국·시비보조금 204.6억 원, 잉여금 87.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감리비 11억 원, 달성비슬도서관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9억 원, 다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15억 원,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계용역 등 7억 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9억 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화원초등학교) 12억 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달성중학교) 30.4억 원, 논공읍 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11억 원, 경북대 모빌리티혁신센터 건축비 지원 8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3억 원,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정비사업 44건에 139.3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건에 24.3억 원, 우수관로 및 농로·용배수로 정비사업 28건에 31.3억 원, 달성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121억 원,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53억 원, 화원 역사문화체험관 내부 인테리어 및 체험시설 설치 19억 원, 세천늪 테마정원 시설 확충 공사 10억 원, 마천산 숲길 정비 10억 원, 기타 시설조성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26.5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5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7.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2.5억 원 등 보건・복지・교육분야에 133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4.7억 원,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 14억 원 등 농업, 도로・소하천 분야 등에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0.8억 원, 국・시비보조금 10억 원, 내부거래 28.7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7.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납부부담금 29억 원, 의료급여관리사업비 등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문화・관광, 도로・교통 및 물류분야 등에 주요 현안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교육・사회복지・보건・농업분야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역안전망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60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전년도 기금결산을 2024년도 계획안에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결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액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

-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증 660억 원
- 지출계획 중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증 660억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입계획	**지출 총계**	**278,890**	**212,881**	**66,009**
	· 예치금 회수	271,009	205,009	66,000
	· 이자수입	7,880	7,872	9
지출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278,890	212,881	66,009

○ 통합계정 지출 변경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입계획	· 이자수입	113	113	40
지출계획	**지출 총계**	3,073	3,073	40
	· 통합계정 예치금	173	3,073	△2,890
	· 예수금원리금 상환	2,900	0	2,900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6조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7.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이 변동되어 수입 및 지출계획의 예치금 항목을 조정하고, 통합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결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을 상환하고자 함입니다.

○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회수금 660억 원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9백만원의 수입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고, 통합계정은 통합계정예치금 29억 원을 감액하여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원금 상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번 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년도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므로 기금운용 목적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번호: 제2447호

2. 발 의 일: 2024년 2월 27일

3. 발 의 자: 김보경 의원 등 12인

4. 제안사유

○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 시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명확화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재위탁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시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는 규정 삭제(안 제4조의3제1항)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 및 동의안 서류 신설(안 제9조)

○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개념의 혼동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재계약 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명확화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특히,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2011.2.10.)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시 보고를 동의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료 후 새로운”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시”로 한다.

제3조 중 “없는 한 이 조례가”를 “없을 경우 이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의회동의 및 보고)”를 “(의회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재위탁을 포함한다)”를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의안 및 보고안”을 “동의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노무사 · 기술사 ·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

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를 "사무위탁의 재계약 적정성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제4조의3제2항을 준용하되, 재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시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없을 경우 이 조례에서 ---------- 따른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	**제4조의3(의회동의)** ①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단서 삭제> ② ---------- 동의안----------

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1. 수탁기관의 선정
<신 설>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신 설>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노무사 · 기술사 ·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재계약)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재계약)** ① ---------- 사무위탁의 재계약 적정성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제4조의3제2항을 준용하되, 재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48호

2. **발 의 일**: 2024년 2월 27일

3. **발 의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불용의약품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 등의 책무를 강화하고, 불용의약품 등이 원활하게 수집되도록 수거용기 비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불용의약품 등 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대한 약사의 책무 신설(안 제4조의2)

○ 불용의약품 등 수집에 대한 군민의 책무 신설(안 제5조제2항)

○ 수거용기 비치장소 구체적 명시 및 안내 강화(안 제6조)

○ 수거용기 위치와 수거방법 홍보·교육 의무 신설(안 제8조)

6. **관계법령**

○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 **검토의견**

○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나,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의 관리는 별도의 상위법령이 없는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폐의약품 뿐만 아니라 불용의약품이 체계적으로 수집·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등이 발생하고, 축적된 의약품 성분으로 생태계가 교란되며, 결국 우리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불용의약품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되나,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처리방법 안내 경험 유무 여부에 대해 74.3%가 '없다'에 응답했으며, 처리계획·방법에 대해서는 54.2%가 '쓰레기통·하수구·변기 등에 버린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복용자가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강화와 원활하고 체계적인 수집·처리를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한 복약지도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대한 약사의 책무와 불용의약품 등 수집에 대한 군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명확화하였으며,

○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수거용기가 비치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더불어 그 안내를 강화하고, 수거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으므로 군민들이 약물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여나갈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불용의약품 등”으로, “군민”을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활동(이하 “수집 등”이라 한다)”을 “활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불용의약품 발생방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용의약품 발생방지”로, “수집 등에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를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를 “기관 및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약사의 책무) ① 군에 약국을 개업신고한 약사(이하 “약사”라 한다)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약사는 복약지도 시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그 수집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가 제4조에 따라 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보건소 등에서”를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대한”으로, “등 수거용기”를 “등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거용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고, 그 위치를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를 “(불용의약품 등의 운반·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을 “통한”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위치와 수거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불용의약품 등----------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관리"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 · 보관 ·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이하 "수집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등에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 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 · 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불용	**제4조(군수의 책무)** ①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용의약품 발생방지-----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 ② ---------- 기관 및 단체--------.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의2(약사의 책무)** ① 군에 약국을 개업신고한 약사(이하 "약사"라 한다)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약사는 복약지도 시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그 수집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가 제4조에 따라 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 ② ----- 발생한 ----------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

의약품 등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등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대한 ---- 등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거용기---.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군 보건소장이나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장소를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고, 그 위치를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② (생 략) ③ 군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통한 ----------.
<신 설>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위치와 수거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제9조 (생 략)	**제9조·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약사법(법률)」(2023.8.16. 일부개정, 2024.2.1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3.8.11. 일부개정, 2024.2.12. 시행)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50호

2. 발 의 일: 2024년 2월 27일

3. 발 의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으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폭염, 도심열섬현상, 폭염취약계층, 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정의(안 제2조)
○ 군수와 군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 종합대책 수립·시행 규정 (안 제5조)
○ 폭염저감조치의 근거 마련(안 제6조)
○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
○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 등(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

6.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

7.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증가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매년 늘어나므로,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안을 정하는 것으로,

○ 이미 2018. 9.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을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해 재난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되었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폭염피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하므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도심 지역의 기온이 그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 및 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도심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도심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3.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4.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피해 저감조치) 군수는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 살수차, 하천·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운영
2.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재난·복지·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지원활동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위치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시설 보수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군수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2023.12.26. 일부개정, 2024.6.27. 시행]

제3조(정의)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자연재해대책법」(2023.4.11. 일부개정, 2023.10.12.시행)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23. 10. 4.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51호

2. 발 의 일: 2024년 2월 27일

3. 발 의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현금성 복지 지원을 지양하는 현 정부 정책기조와 가용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입학준비금에 물품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의 자격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5. 주요내용

○ 입학준비금 물품을 추가하여 입학준비금품으로 확대(안 제2조제3호)

○ 지원대상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여 지원기준 강화(안 제5조의제2항~제3항)

○ 일반용봉투 지원기준 횟수 삭제(안 제6조제2항)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

6.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초·중등교육법」,「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입학준비금에 물품 추가,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에 거주기간 추가, 일반용봉투 지원기준 횟수 삭제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특히 입학준비금에 물품을 추가한 것은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 전략회의(23.5.31.)'에서 발표한 현금성 복지 지원을 지양하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사업이 미추진으로 결정되는 바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현 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물품을 추가한 것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지원기준 강화 및 일반용봉투 지원기준 횟수를 삭제한 것은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학준비금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그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입학준비금"을 "입학준비금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입학준비금"을 "입학준비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을 둔"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별"을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사용·이용 개시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개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입학준비금"을 "입학준비금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구당"을 "가구당 연간"으로, "연 1회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입학준비금"을 "입학준비금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입학준비금"을 "입학준비금품"으로 한다.

제9조 중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입학준비금품 지원신청서”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대장”을 “입학준비금품 지원 신청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품(물품 또는 지원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입학준비 지원금 (　　) □ 입학준비 물품 (　　) 해당란에 “O” 표시							
대상자 (학생)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학교명		학년·반		입학일		
	주 소		전입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주 소						

□ 입학준비 지원금 중복수혜 여부 (해당란에 “O” 표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준비금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은 금액 (　　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입)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지원금으로 받는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자격요건 심사 및 사후관리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대상자 학생: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학년·반, 입학일 포함),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전입일자 포함),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입학준비금 등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및 학교, 교육 관련 기관

▸ **본인은 상기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세대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품 지원 신청대장

읍·면

접수번호	신청일	신 청 인				대 상 자				비고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달성군전입일)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달성군전입일)	학교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입학준비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 5. (생 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입학준비금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그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 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의 지급 2. ~ 4. (생 략)	**제4조(지원내용)** ----------. 1. 입학준비금품- -----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자녀로 한다. ② 일반용봉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에게 지급한다. ③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는 개별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① 입학지원금품 ----------. ②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 ③ ----------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사용·이용 개시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개별 ----------.
제6조(지원기준) ①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매년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① 입학준비금품액----------
② 일반용봉투는 신청한 가정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1,000L 한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가구당 연간 ------- 지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일반용봉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 입학준비금품-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생 략)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 입학준비금품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62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및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

5.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8조제2항제8호 : 공공시설·기계전기 → 공간기획·공공시설

· 안 제9조제2항제1호 : 문화예술·문화시설·문화재
→ 문화예술·문화시설·국가유산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2023년 5월 16일 제정된「국가유산기본법」('24.5.17. 시행)에 따라 「문화재보호법」등 10개 관계 법령이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시행일 전까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완료에 대해 권고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팀 명칭 및 분장사무를 변경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공시설과의 기계전기팀을 공간기획팀으로, 문화예술과 내 문화재팀을 국가유산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공공시설ㆍ기계전기”를 “공간기획·공공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문화예술·문화시설·문화재”를 “ 문화예술·문화시설·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도시국)②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 공공시설·기계전기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도시국)②----------. 8. 공간기획·공공시설-------.
제9조(문화관광국)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문화시설·문화재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관광국)②----------. 1. 문화예술·문화시설·국가유산-------.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 자격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 징계 ·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 · 군 · 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 · 군 · 구 본청의 실 · 국이나 과 ·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 · 군 · 구 본청에 두는 실 · 국이나 실 · 과 · 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 · 군 · 구 본청의 실장 · 국장과 과장 · 담당관의 직급과 실 · 과 ·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관할 시 · 군 · 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실 · 국과 실 · 과 ·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 도와 시 · 군 ·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 · 군 · 구의 실장 · 국장 · 담당관 · 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 · 국장 · 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 · 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63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원 및 행정기구 조정

5.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안 제2조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1,025명 → 1,030명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 1,004명 → 1,005명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 25명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안[별표 3]

- 총 정원 : 1,025명 → 1,030명(+5)
- 본청 정원 : 658명 → 659명(+1)
- 의회사무국 정원 : 21명 → 25명(+4)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8조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2024년 7월 1일부터「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될 달성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원을 확대함에 따라 달성군의 정원 및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집행기관에 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4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은 1,004명에서 1,005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21명에서 25명으로 개정하고, 그에 따라 달성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025명에서 1,030명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여부와 내용 및 형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25명”을 “1,0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4명”을 “1,0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1명”을 “2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1,030	659	25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95	651	25	84	177	5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943	616	22	81	169	55
연구직 계	4	4				
연 구 관						
연 구 사	4	4				
지도직 계	27			27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5			25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1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1,02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0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제2조(정원의 총수) ----------1,030명----------. 1. ---------- : 1,005명 2. ---------- : 25명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1,025	658	21	111	177	58	총 계	1,030	659	25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90	650	21	84	177	58	일반직 계	995	651	25	84	177	58
3급	1	1					3급	1	1				
4급	8	5	1	1	1		4급	8	5	1	1	1	
5급	43	29	2	2	7	3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938	615	18	81	169	55	6급이하 계	943	616	22	81	169	55
연구직 계	4	4					연구직 계	4	4				
연 구 관							연 구 관						
연 구 사	4	4					연 구 사	4	4				
지도직 계	27			27			지도직 계	27			27		
지 도 관	2			2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5			25			지 도 사	25			25		
별정직 계	3	3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1	1					7급상당 이하 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민선8기 군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신설한 공공시설과의 업무 조정,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원 및 행정기구 조정

2. 비용 발생 요인

공무원 증원 5명(일반임기제 1명 포함)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연도별 비용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1,740,419천 원** 정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1,740,419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 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황은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322,615**	**334,875**	**347,600**	**360,809**	**374,520**	**1,740,419**
지 방 세		322,615	334,875	347,600	360,809	374,520	1,740,419
의존재원							
세 출		**322,615**	**334,875**	**347,600**	**360,809**	**374,520**	**1,740,419**
인 건 비		322,615	334,875	347,600	360,809	374,520	1,740,419
재원 조달		**322,615**	**334,875**	**347,600**	**360,809**	**374,520**	**1,740,419**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 비		**322,615**	**334,875**	**347,600**	**360,809**	**374,520**	**1,740,419**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 자격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 징계 ·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 ·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71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립중인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제11조에 따라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달성군 경관계획 최초 수립 : 2017년

○ 관련용역

- 용 역 명 : 달성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 용 역 비 : 150백만 원
- 용역기간 : 2023. 3. ~ 2024. 6.
- 용 역 사 : ㈜오씨에스 도시건축사사무소

○ 공간적 범위 : 달성군 행정구역 전지역(428.3㎢)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4년·목표연도 2029년

○ 내용적 범위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구체적 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등

○ 경관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 사회기반 시설(도로·하천),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개선사업 등
- 심의방법 :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 심의 매달 실시

접 수		심 의		점 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안건 접수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사항 점검

○ 추진상황
- 2023. 3. : 용역 착수
- 2023. 5. : 착수보고회 실시
- 2023. 6. ~ 2024. 1. : 현장조사 실시 및 지역 주민의견 청취
- 2024. 2. : 공청회 개최
- 2024. 3. : 군의회 의견청취

○ 향후계획
- 2024. 3. : 郡 경관위원회 검토 심의
- 2024. 3. : 市 경관위원회 승인 심의
- 2024. 4. : 행정예고
- 2024. 5. : 고시
- 2024. 6. : 달성군 경관 조례 개정

6. 관계법령

○ 「경관법」 제11조 및 제15조
-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에 따른 5년마다 수립

7.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달성군 행정구역 전 지역에 걸쳐 기준연도를 2024년으로, 2029년을 목표연도로, 우리군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는 경관 기준을 마련하고, 잠재된 지역 이미지와 경관유형별로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권역별 경관 가이드라인과 경관위원회 심의 실시로,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검토·정비 및 보완하여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관법」 제11조에 적합하도록 경관계획을 재정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2023년 3월 착수하여,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현장조사와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자연·관광·산업·행복·정주 등 다양한 가치를 담아 달성군민의 삶에 체감 가능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아울러,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을 반영하여, 상위계획 및 대구시와의 관계성 주변지역과도 연계가 잘 이루어졌고, '국토교통부 경관계획수립지침', '달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과도 부합되어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경관법」제7조, 제11조, 제15조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안)

구분		심의대상	
사회기반 시설	도로	인도가 설치되며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사업	
	하천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개발사업	도시지역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도시지역 외의 지역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마을정비구역	대상지역 면적이 20만㎡ 이상인 생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공장, 창고 용도 등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 조성중인 곳은 제외)	
	공공건축물	연면적 660㎡ 이상의 신축하는 건축물(설계공모방식 건축물 제외)	
	공동주택	공동주택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재도색 포함)	
	일반건축물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공장, 창고 용도 등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 조성중인 곳은 제외)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의 건축물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경계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0m 이내의 구역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공작물 중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 건축물은 제외)
기타사항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군수가 추진하는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마련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진흥,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외대상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 경관계획 재정비(안) 추진방향

□ 경관계획 재정비(안) 권역 계획

가. 경관권역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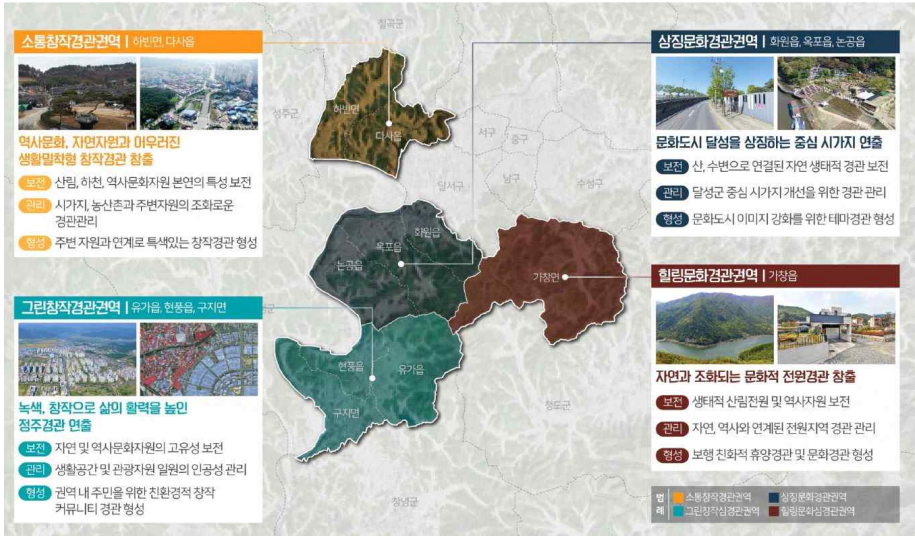

나. 경관축 계획

2024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57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변경

- 달성 북부권(다사,하빈)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이 적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 도입이 필요함.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도서관 및 육아·청소년 시설 등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함.
-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대실역을 비롯한 상가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함.

○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

-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창 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성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편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냉천유원지 내 주차장 용지를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주민편익
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대구산업선 개통시 구지면에 다수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급격히 증대될 행정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고 지역주민 및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원활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를 구지면 복합문화센터 부지로서 취득하고자 함.

❍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논공·옥포 지역 내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변 주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이에 따라 원활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를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부지로서 취득하고자 함.

5. 주요내용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변경]

❍ 다사 복합커뮤티니 센터 건립
- 위　　치 :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 기　　간 : 2022. 9. ~ 2027. 7.
- 규　　모 : 부지면적 6,312㎡, 연면적 12,200㎡(지하2층/지상5층)
- 주요시설 : 공공도서관, 영·유아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소극장
- 총사업비 : 629억원 정도
  · 공사비 382억, 설계·감리비 51억, 부대비 20억, 예비비 45억
    기투자(부지매입비) 131억

※기준가격(대장가격) -건물(사업비) : 49,715,000,000원

❍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 위　　치 :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 기　　간 : 2023. 4. ~ 2027. 1.
- 규　　모 : 부지면적 8,667㎡, 연면적 7,472㎡(지하2층/지상2층)
- 주요시설 : 주차장, 다목적체육관
- 총사업비 : 487억원 정도
  · 공사비 245억원, 설계·감리비 32억, 부대비 2억, 예비비 28억
    기투자(부지매입비) 180억

※기준가격(대장가격)
-건물(사업비) : 30,692,000,000원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

- 위　　치 : 가창면 냉천리 2-22
- 기　　간 : 2022. 9. ~ 2025. 10.
- 규　　모 : 부지면적 2,321㎡, 연면적 1,450㎡(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1개소 (주차면수 22면정도)
- 총사업비 : 62.5억원 정도
  · 공사비 59.38억, 설계비 2.51억, 감리비 0.62억

※기준가격(대장가격)
-건물(사업비) : 6,250,000,000원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위　　치 :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
- 기　　간 : 2024. 1. ~ 2027. 7.
- 규　　모 : 부지면적 8,477.4㎡
- 주요시설 : 수영장, 문화강좌실, 영유아센터
- 총사업비 : 부지매입비 27.9억원 정도 (조성원가 및 법정이자)
  · 조성원가 : 294,736(원/㎡)×8,477.4(㎡) = 2,498,594,966원
  · 법정이자 : 2,498,594,966(원)×0.05/365(일)×851(일) = 291,274,564원
- 근거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6항제2호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9,587,939,400원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위　　치 :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
- 기　　간 : 2023. 1. ~ 2027. 12.
- 규　　모 : 부지면적 12,000㎡
- 주요시설 : 도서관, 문화강좌실, 어린이건강놀이터
- 총사업비 : 부지매입비 114.3억원 정도 (조성원가+법정이자)
  · 조성원가 : 696,500(원/㎡)×12,007.4(㎡) = 8,363,154,100원
  · 법정이자 : 8,363,154,100(원)×0.05/365(일)×2,677(일) = 3,066,871,715원
- 근거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2조제8항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0,003,364,940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비고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4 (2/3)	41,606	106,248,304	4 (2/3)	41,606	106,248,304	
	1.매입	토지				2 (2)	20,484	19,591,304	2 (2)	20,484	19,591,304	매입
		건물				-	-	-	-	-	-	
	2.교환	토지				-	-	-	-	-	-	
		건물				-	-	-	-	-	-	
	3.기타	토지				-	-	-	-	-	-	
		건물				2 (3)	21,122	86,657,000	2 (3)	21,122	86,657,000	신축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종 류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대	대	다사읍	매곡리	1553	12,200	12,200	49,715,000,000	2027.7.	다사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다사읍	매곡리	1553	7,472	7,472	30,692,000,000	2027.1.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 (건물)	주차장	주차장	가창면	냉천리	2-22	1,450	1,450	6,250,000,000	2025.10	가창 주민복지회관 건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3 (토지)	대	대	구지면	응암리	1233	8477.4	8477.4	9,587,939,400	2024.4.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 토지주택 공사	매입
4 (토지)	학교 용지	대	옥포읍	교항리	2947	12,007.4	12,007.4	10,003,364,940	2024.4.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 토지주택 공사	매입

위 치 도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변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일원

위 치 도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22

위 치 도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

현 장 사 진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

위 치 도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

현 장 사 진(조 감 도)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

6. 검토의견

○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변경

- 달성 북부권(다사,하빈)은 많은 지역의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 확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공공도서관 및 영유아·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대실역을 비롯한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사업은
- 군민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

-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창 지역의 개발을 통해 달성군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냉천유원지 내 주차장 용지를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노인쉼터, 가족놀이시설, 도서관 등의 복지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 지역내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본사업은 구지면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대구산업선 개통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행정·문화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고 주민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를 매입하여 구지면 복합문화센터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난 2023년 12월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5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는 본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본사업은 논공·옥포 지역 내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를 매입하여 중부권 복합문화센터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논공·옥포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9.5.29)
3.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삭제)
5.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④ : (생략)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학교시설용지 · 어린이집용지 · 공공의료시설용지 · 공공청사용지 · **공공문화시설용지** · 공공복지시설용지 · 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 · 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택지를 공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 동의하에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표3〉

구분	용도별	공급지역		
		수도권·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 수준	공공용지	100%	100%	100%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택지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58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 추가(변경) 출연금액 : 900백만 원

- 글로벌교육지원 사업비 추가 출연 : 900백만 원
  - 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600백만 원 증액
  - 중등 영어 방학캠프 운영 300백만 원 신규 편성

☞ 현장 중심의 영어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실용영어 등 영어학습 능력을 키우고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교육경쟁력 강화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중 현장 중심의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역량 증대를 위한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정 2,089백만 원에서 9억 원을 증액한 2,989백만 원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통학형에서 숙박형으로 변경하여 영어체험학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증액분 6억 원과 중·고등학생 대상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등 영어 방학캠프 운영비 3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군민 및 사업 제공·수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번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1부.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부.
3. 출연기관 현황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교육재단 ○ 대 표 : 최 재 훈 ○ 일반현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2,989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2024 1차추경 요구액	2024 본예산 출연액
합 계	9,023	2,989	2,089
인력운영비	438	438	438
기본운영비	530	322	322
자본적 경비	1,127	54	54
장학사업	586	-	-
진로진학사업	136	136	136
학생 건강증진 사업	48	-	-
달성 바로알기 지원사업	107	-	-
4차산업 등 교육지원사업	176	-	-
교육협력 네트워크 조성	3	-	-
글로벌 교육지원	3,300	2,036	1,136
평생학습도시 조성	3	3	3
군립·남부도서관 운영	2,559	-	-
달성미래교육지구	10	-	-

※ 군립·남부도서관 운영비(2,559백만원) 및 달성미래교육지구(10백만원)은 위탁사업비로 별도 교부

출 연 필요성	○ 군민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으로 교육 분야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교육경쟁력 강화 ○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역량을 키우고 현장중심 영어교육으로 국제적 마인드 함양
근 거 법 령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12조
사 업 부 서 의 견 (총평)	○ 민정8기 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에 중요한 역할 ○ 달성만의 차별화된 영어 프로그램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긍정적 효과 기대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4년 출연금 900백만 원 추가 지원으로 글로벌교육 지원 확대

- 기존의 초·중 대상 영어체험학습 지원 600백만 원 증액과 신규 사업인 중등 영어 방학캠프 운영으로 300백만 원 증액
- 현장체험 중심 영어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실용 영어 능력 향상

❍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군정 취지에 맞게 관내 외국어 교육여건을 보완하여 차별화된 영어 프로그램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교육발전의 긍정적 효과 기대

2.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1차 추경 예산(안)			2024년 출연액 (A)	증감액 (B-A)
	재단 예산액	재단 요구액	부서 검토액 (B)		
총 계	9,024	2,989	2,989	2,089	900
재단운영비	2,096	814	814	814	
인력운영비	438	438	438	438	
기본운영비	531	322	322	322	
자본적 경비	1,127	54	54	54	
자체사업비	4,359	2,175	2,175	1,275	
진로진학 지원	136	136	136	136	
글로벌 교육지원	3,300	2,036	2,036	1,136	900
평생학습도시 조성	3	3	3	3	
장학금 지원	586	-		-	-
학생 건강증진 지원	48	-		-	-
달성 바로알기 지원	107	-		-	-
4차산업 등 교육지원	176	-		-	-
교육협력 네트워크 조성	3	-		-	-
위탁사업비	2,569	-		-	-
군립·남부도서관 운영	2,559	-		-	-
달성미래교육지구 사업	10	-			

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재)달성교육재단	전화번호	053.644.9683
		홈페이지	www.dsjanghak.or.kr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요연혁	2000. 4. 4. 등기		

임원(17) (24.2.29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이희갑	前 대구미래교육원 원장	2023.8.1.~2027.7.31
	비상임이사	나상권	달성군 교육복지국장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김형년	농협달성군지부 지부장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이대현	하빈면 체육회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신창섭	자영업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곽두섭	前 유가농협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석재추	前 옥포읍번영회장	2023.7.10~2027.7.9
	비상임이사	조성래	논공읍 체육회 이사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홍진웅	화원새마을금고 이사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최상국	前 달성군의회 의원	2023.8.1~2024.12.31
	비상임이사	심경용	前 대구학생문화센터 관장	2023.8.1~2024.12.31
	비상임이사	백윤태	구지면 장학회 이사	2023.8.1~2024.12.31
	비상임이사	김우식	달성군 체육회 이사	2023.8.1~2024.12.31
	비상임이사	이진규	달성군 체육회 이사	2023.8.1~2027.7.31
	감사	김대근	세무법인 양정 세무사	2023.8.1~2025.7.31
	감사	윤종민	달성군 회계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달성군 교육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 ○ 각종 교육지원 사업 수행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재무현황 2023.12.31. 기준	기본재산	31,961
	예산액	4,499	5,038	8,114			
	지자체 지원액	3,512	2,391	2,089		보통재산	3,143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의 출연금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재정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61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 기부금 수입 변경 : 50,000천 원 증

- (당초) 금50,000천 원 →(변경) 금100,000천 원

○ 예치금 변경 : 17,014천 원 감

- (당초) 금71,400천 원 →(변경) 금54,386천 원

6.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7. 검토의견

○ 본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 목표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나, 2023년 12월에 기금이 집중되어 최종 7,400만 원을 모금한 바, 모금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2024년 기부금 수입 예상액을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이 변경되어 수입 및 지출의 예치금을 변경 조정하여 고향사랑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기금운용계획서(변경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기금운용계획서(변경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4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2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2)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 접수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3) 설치년도 : 202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부금 모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기부자의 답례품 제공, 기부금 활용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 도모
(2)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부금 모금, 접수에 따른 답례품 제공, 기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54,386	101,000	0	101,000	155,38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4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55,386	0	0	155,386

(2) 재원조성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으로 조성
(3) 지원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4) 지원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주민복리증진 사업추진 지원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4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2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55,386	122,400	32,986	합 계	155,386	122,400	32,986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4,386	71,400	△17,014	예치금	155,386	122,400	32,986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000	1,0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00,000	50,000	50,000	기타지출	0	0	0

회계연도 : 2024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2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 관 · 항 ·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01,000	51,000	5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0	1,000	0	
216 이자수입	1,000	1,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	1,000	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0,000	50,000	50,000	
224 기타수입	100,000	50,000	50,000	
224-03 기부금수입	100,000	50,000	50,000	
				○고향사랑기부금 100,000,000원 - 기정 50,000,000원 = 50,000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386	71,400	△17,014	
710 보전수입등	54,386	71,400	△17,014	
714 예치금회수	54,386	71,400	△17,014	
714-01 예치금회수	54,386	71,400	△17,014	
				○예치금 회수 54,386,440원 - 기정 71,400,000원 = △17,014
수 입 합 계	155,386	122,400	32,986	

회계연도 : 2024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2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자치행정과	155,386	122,400	32,986
기타	155,386	122,400	32,986
재무활동(자치행정과)	155,386	122,400	32,986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고향사랑기금)	155,386	122,400	32,986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	155,386	122,400	32,986
602 예치금	155,386	122,400	32,986
01 일반예치금	155,386	122,400	32,986
○ 일반예치금 경정 155,386,000원 - 기정 122,400,000원 = 32,986			
지 출 합 계	155,386	122,400	32,986

3.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4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2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 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8년 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9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0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1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2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3년도	54,386	35,610	0	0	0	0	114	18,662	0	0	0	0	0	0	0	54,386
2024년도	101,000	0	0	0	0	0	1,000	100,000	0	0	0	0	0	0	0	101,000
계	155,386	35,610	0	0	0	0	1,114	118,662	0	0	0	0	0	0	0	155,386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4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2차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2년도말현재액	2023년도말현재액ⓐ	2024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0	54,386	155,386	101,000	
예치금	소계	0	54,386	155,386	101,000	
	농협은행	0	54,386	155,386	101,000	

붙임	상위 및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49호

2. 발 의 일: 2024년 2월 27일

3. 발 의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달성군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규정하여 소속감 부여 및 행정 혜택을 제공하고, 관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의 지위 신설(안 제3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제14항~제15항)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제2항)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달성군의회 생활정책연구회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규정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행정 혜택 제공을 확대하고자 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동행 프로그램 지원, 결혼이민자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연령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달성군 관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달성군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과 정서적 안정,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기반한 개정 사항 정비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를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문화가족의 지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하면서”로,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을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를 사용한”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5호 중 “입은”을 “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고”를 “높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선주민과 이주민의 공존을 위한 동행 프로그램 지원

15. 결혼이민자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6조(종전의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때는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을 “없을 때는 부위원장”으로, “없는 때에는 위원장”을 “없을 때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있을 경우에”를 “있으면”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2항 단서 중 “그 직무”를 “자신의 직무”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참석할 때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 경우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을 “등으로”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군 소속이 아닌 위원의 참석에 대해서”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1. ---------- 「다문화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조제1호--.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 법 제2조제2호----------.
<신 설>	제3조(다문화가족의 지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추진하면서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를 사용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5. ----------당한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높임----------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선주민과 이주민의 공존을 위한 동행 프로그램 지원
<신 설>	15. 결혼이민자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14. (생 략)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④ ----------.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때는 그렇지 않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3. ---------- 관계기관---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없을 때는 부위원장 ---------- 없을 때는 위원장----------.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 ① ---------- 있으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 ----------.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자신의 직무--- 참석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 발생하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 장기치료가 필요한 ----------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 등으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수당 및 실비변상) 군 소속이 아닌 위원의 참석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	제13조(위원수당 및 실비변상)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제5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① --- 제5조---------- 필요한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한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2020.5.19. 일부 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 ·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52호

2. **발 의 일**: 2024년 2월 27일

3. **발 의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다자녀기준 완화(별표 1중 제1호아목)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 6.30.] 제정의 취지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 중 다자녀가정 개정규정의 적용례) 별표 1 중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용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제6조제1항 관련) 1. 용어의 뜻 가. ~ 사. (생략) 아.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자. ~ 차. (생략) 2. ~ 4. (생략)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제6조제1항 관련) 1. 용어의 뜻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자. ~ 차.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53호

2. **발 의 일**: 2024년 2월 27일

3. **발 의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다자녀기준 완화(별표 1)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의 2023년 3월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제정의 취지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1란 중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를 “다자녀 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 중 다자녀가정 개정규정의 적용례) 별표 1의 비고 1란 중 다자녀가정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용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제6조제1항 관련)

대상자	체험료		비고
	개인	단체	
일반	10,000원	8,000원	※ 비 고 1. - (생략) - (생략) - (생략) -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달성군민	8,000원	-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아젤리아 호텔, 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자	6,000원	-	※ 비 고 2. - (생략)

개　정　안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제6조제1항 관련)

대상자	체험료		비고
	개인	단체	
일반	10,000원	8,000원	※ 비 고 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달성군민	8,000원	-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아젤리아 호텔, 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자	6,000원	-	※ 비 고 2. -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64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조례 제목 및 내용에 기재된 “리장”명칭을 “이장”으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제목 및 내용 중 “리장” 명칭을 “이장”으로 변경

○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 추가(안 제6조)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운영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순화된 용어의 변경으로 군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인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제4호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제2조의 제목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장은 자신의 주민등록 및 거주 리구역에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돕는 기능을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발전을”을 “소속 리지역의 발전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할 읍·면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리장”을 각각 “이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3. 국내외 연수
4. 교육훈련
5. 체육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장의 ----------.
제2조(리장의 임무) ① 리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자신의 주민등록 및 거주 리구역에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돕는 기능을 한다.
② 리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3. (생략)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② 이장은 ----------.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3조(복무) ① 리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 ① 이장은 ----------소속 리지역의 발전을----------.
② 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면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할 읍·면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장은 ----------.
④ 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이장이 ----------.
제4조(실비변상) ① 리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드는----------범위----------.
② 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장에게는 ---- 범위----------.
제5조(편의제공) 리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

제6조(사기진작) 리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가입, 모범리장의 선발표창, 국내외 연수,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3. 국내외 연수 4. 교육훈련 5. 체육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 · 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 면장 · 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 · 면장 · 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65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조례 명칭에 '치안협의회'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달성경찰서의 소관부서 변경을 반영하고 운영 사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 복지 및 보호 대상으로서 노인을 명시화(안 제2조, 제3조)

○ 지역치안협의회 간사 담당 규정 변경(안 제5조)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7조)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치안협의회를 구성,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현재 대구시 9개 구·군 중 대구시, 중구, 서구, 달서구, 수성구 등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대구시와 달성군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 및 치안협의회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행정조직 소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의 대상을 기존 '아동, 청소년, 여성'에서 노인까지 그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을 “아동·청소년·여성·노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죄예방”을 “범죄 및 사고 예방”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예방”을 “범죄 및 사고의 예방과 관련된”으로 한다.

1. 아동,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복지 분야 전문가

제5조제1항 중 “경무과장”을 “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나 부의장의 요청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 과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단체 협의회 업무 실무자(과장급)를 원칙으로 하되, 실무협의회 안건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단체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계장) 또는 담당자로 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원)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5. (생략) ③ (생략)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아동·청소년·여성·노인 ---------- 3. 범죄 및 사고 예방----------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③ (생략) ④ (생략)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 3.~4. (생략) ⑤ (생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아동,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복지 -------- 2. 범죄 및 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 3.~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달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간사) ① ---------- 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장----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나 부의장의 요청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서면 또는 온라인 --------
제7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생략)	제7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 과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단체 협의회 업무 실무자(과장급)를 원칙으로 하되, 실무협의회 안건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단체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계장) 또는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① ---------- 행정적인 지원과 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66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권역별 운영에 따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사업 방향성 전환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5. 주요내용

○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 방향성 전환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 안 제7조(운영지원) 조문 中 ‘한국인 주 강사료’ 추가

○ 이용료 징수를 위한 조문 신설

- 이용료 징수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10조)

6. 검토의견

○ 「평생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그 경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기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 지원의 수탁자에 대한 범위 확대는 타당하며 이용료 징수 또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강사료, 한국인 주·보조 강사료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원어민 영어교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필요한 경우 교재비 등 수강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 금액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10조제2항 관련)

종류	금액(원)		기간
원어민 영어교실	주 3회	50,000	3개월
	주 2회	4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 강사료, 보조강사료 2. ~ 3. (생 략) ② (생 략)	제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 강사료, 한국인 주·보조 강사료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원어민 영어교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필요한 경우 교재비 등 수강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 금액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조례의 준용) (생 략)	제11조(조례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생 략)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3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 임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억원 미만)

2. 미첨부 사유

가. 남부권 원어민영어교실 결제시스템 구축 : **2,650천원** 정도

- **카드단말기 1식 구입** : 약 400천원 / 최초 1회
- **결제대행 수수료 지급** : 약 1,750천원 / 연 1회
- **취소 반환금 지급** : 약 500천원 / 연 1회

3. 작성자 :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장 김재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67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가정 및 병역명문가로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안) 제12조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기준 명료화

○ 안) [별표 1] 장기등록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내용 삭제

○ 안) [별표 3] 이용료 등의 감면 항목 중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범위 확대 (3자녀 이상 가정 → 2자녀 이상 가정)

○ 안) [별표 3] 병역명문가에 대한 이용료 감면 내용 신설

6. **검토의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다자녀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조건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를 제정하여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기존 3인 이상의 가정에서 2인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에서는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다자녀 가구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사용 시기 및 상황에 따른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 효율성의 증대 등을 위하여 그 사용료를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 수영장 이용료 및 헬스장 이용료를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에 대하여 중복적용을 아니하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④ 전항들에 따라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허가나 이용을 신청하는 때 사용료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신청서에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가 함께 수영장을 1일 입장 이용 시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의 적용례)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허가신청 또는 이용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 · 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19세이상)			중.고생 (13~18세)			유아,초등 (12세 이하)			아쿠아로빅 (전체연령)		1일 이용 요금		
수영장	이용요금(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요금(월)	50,000											5,000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비고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 2. 동일 단체 소속 **수영장** 1일 **이용**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3. 아래 기재 시설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 정도에 비례하여 시설이용료 증감 가능** **4. 이용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 시설 운영시간

구 분	평일(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수 영	06:00~22:00	06:00~18:00	09:00~18:00	전관휴관
헬 스	06:00~22:00	06:00~18:00	09:00~18:00	
※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여성문화복지센터 내부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100,000원 이하	·주1회 한달 기준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위 기재 시설 운영시간 증감에 따라 수강시간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정도에 비례하여 수강료(문화강좌 이용료) 증감 가능.** ·교재 및 재료비 별도	

3) 시설사용료

가. 대 관 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시간(22:00~익일08:00)의 시설사용은 "야간 요금에 50%를 가산한 금액" 을 적용함(3,4,5항 적용하지 않음)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 비 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5,000	
음향	빔프로젝트	1회	20,000	
	유선마이크	1회	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	개당 10,000	
	CD 플레이어	1회	10,000	
무대시설	보면대	1회	10,000	
	의자	1회	10,000	
냉·난방		1회	8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 시기 및 상황에 따른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 효율성의 증대 등을 위하여 그 사용료를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 수영장 이용료 및 헬스장 이용료를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에 대하여 중복적용을 아니하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 ~ 10. (삭제)
④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항들에 따라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허가나 이용을 신청하는 때 사용료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⑤ 수영장 1일 입장 이용시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체감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가 함께 수영장을 1일 입장 이용시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 · 헬스장)

(단위: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수영장	이용요금	생략				
헬스장	이용요금	50,000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비고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 2. 동일 단체 소속 1일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생략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100,000원 이하	·주1회 한달 기준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비 별도	

3) 시설사용료

가. 대 관 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 주 1) ~ 5) 생략

나. 생략

개 정 안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 · 헬스장)

(단위:원)

구분		성인 (19세이상)	중.고생 (13~18세)	유아,초등 (12세 이하)	아쿠아로빅 (전체연령)	1일 이용 요금
수영장	이용요금 (월)	현행과 같음				
헬스장	이용요금 (월)	50,000				5,000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비고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 2. 동일 단체 소속 수영장 1일 이용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3. 이래 기재 시설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 정도에 비례하여 시설이용료 증감 가능** **4. 이용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 삭제

※ 현행과 같음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100,000원 이하	·주1회 한달 기준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위 기재 시설 운영시간 증감에 따라 수강시간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정도에 비례하여 수강료(문화강좌 이용료) 증감 가능.** ·교재 및 재료비 별도	

3) 시설사용료

가. 대 관 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 주 1)~5) 현행과 같음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시간(22:00~익일08:00)의 시설사용은 "야간 요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함(3,4,5항 적용하지 않음)

나.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3】

이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개 정 안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	**신 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30%**	**신 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변 경**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의 지급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이하 "일반용봉투"라 한다)의 무료 제공
3. 사용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로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1564호,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예우,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예우)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의 시책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해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관련 사항

○ 내　　용 :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2조제3항 관련)

○ 주요내용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사용료 감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자녀 2명이상 가정 지원(신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신설)

<이용료 감면 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감면대상 : 월 회원으로 수영장, 헬스장 사용하는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감 면 율 : 가.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 ⇨ 30%(신설)
나. 다자녀가정 중 3자녀 가정이상 ⇨ 50%(변경)
다.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50%(신설)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해당 조례 재정건은 비예산사업임)

○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하는 월 회원 중 다자녀가정의 등록 회원수 및 지역내의 다자녀가정의 수가 유동적이라 파악의 어려움.

3. 작성자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장 송재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68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제4차 문화도시 지정(22. 12. 6.)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전 제정된 본 조례의 문화도시 "지정"의 조문을 "지정 및 그 조성"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기존 위원회의 기능이 문화도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로 되어있어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문화예술분야 관련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고,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조정에 따라 "심의·의결"을 "심의하거나 자문"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제2항)

○ 위원회의 구성 등에 "50명"을 "1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2항)

○ 위원의 구성 구체화(당연직, 임명직·위촉직)(안 제9조제3항)

○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12조제5호)

6. **검토의견**

○ 지난 2022년 12월 달성군이 제4차 문화도시 지정(22. 12. 6.)에 선정됨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2021.11.10. 일부개정 2022.10.28.] 의 조문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예술분야 관련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고,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조성”을 “지정”으로 하고, “지정”을 “조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정”을 “지정 및 그 조성”으로 하고, “자문, 참여를 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응하기 위하여”를 “참여 등의 활동을 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하거나 자문하기”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4호 중 “군수 또는 위원회”를 “군수”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임명직·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문화예술기관·단체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4호 중 “제13조제1항 각 호”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의 위촉 시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할 때 그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정”을 “지정 및 그 조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도시추진단은 제7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도시위원회의 해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제8조에 따른 문화도시위원회는 해산하고 그 위원 전체는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군수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의 성과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정---------- ---------- ----------조성---------- ----------.
제7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 참여를 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 ① ---------- --------지정 및 그 조성---------- ----------참여 등의 활동을 할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 ---------- ---------- ----------.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2. (생략)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 2.(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군수----------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5명 ---------- ---- 구성한다. ② ----------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임명직·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문화예술기관·단체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생략)	④ <삭 제>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4. 제13조의---------- 5. 위원의 위촉 시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생 략)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할 때 그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지정 및 그 조성-------. ②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 문화산업 · 관광 · 전통 · 역사 · 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 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 ·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8.>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69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달성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가정 및 병역명문가로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안) 제12조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기준 명료화

○ 안) [별표 1] 장기등록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내용 삭제

○ 안) [별표 3] 이용료 등의 감면 항목 중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범위 확대 (3자녀 이상 가정 → 2자녀 이상 가정)

○ 안) [별표 3] 병역명문가에 대한 이용료 감면 내용 신설

6. 검토의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다자녀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조건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를 제정하여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기존 3인 이상의 가정에서 2인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에서는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다자녀 가구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사용 시기 및 상황에 따른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 효율성의 증대 등을 위하여 그 사용료를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 수영장 이용료 및 헬스장 이용료를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에 대하여 중복적용을 아니하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④ 전항들에 따라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허가나 이용을 신청하는 때 사용료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신청서에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가 함께 수영장을 1일 입장 이용 시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의 적용례)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허가신청 또는 이용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 · 헬스장)

(단위 : 원)

구분		19세이상			13~18세			12세 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일 이용 요금		
수영장	이용요금 (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19세 이상	13 ~18세	12세 이하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요금 (월)	50,000											5,000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비고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 2.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3. 동일 단체 소속 수영장 1일 이용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아래 기재 시설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 정도에 비례하여 시설이용료 증감 가능													

※ 시설 운영시간

구 분	평일(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수 영	06:00~22:00	06:00~18:00	09:00~18:00	전관휴관
헬 스	06:00~22:00	06:00~18:00	09:00~18:00	
※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달성문화센터 내부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백년홀)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전시실(백년갤러리)	1일	3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시간(22:00~익일08:00)의 시설사용은 "야간 요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함(3,4,5항 적용하지 않음)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 비 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5,000	
음향	유선마이크	1회	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	개당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CD 플레이어	1회	10,000	
무대시설	보면대	1회	10,000	
	의자	1회	10,000	
냉·난방	공연장	1회	80,000	
	전시실	1일	3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사용 시기 및 상황에 따른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 효율성의 증대 등을 위하여 그 사용료를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 수영장 이용료 및 헬스장 이용료를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에 대하여 중복적용을 아니하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 ~ 10. (삭제)
④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항들에 따라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허가나 이용을 신청하는 때 사용료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⑤ 수영장 1일 입장 이용시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체감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가 함께 수영장을 1일 입장 이용시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 · 헬스장)

(단위: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수영장	이용요금	생략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요금	50,000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비고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 2. 동일 단체 소속 1일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생략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백년홀)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삭제	-	-	
	-	-	
	-	-	
전시실(백년갤러리)	1일	30,000	

※ 주 1) 생략
2) 생략
3)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생략
5) 생략
6) 생략

나. 생략

개 정 안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 · 헬스장)

(단위:원)

구분		19세이상	13~18세	12세 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일 이용 요금		
수영장	이용요금 (월)	현행과 같음				19세 이상	13~18세	12세 이하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요금 (월)	50,000				5,000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비고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 2.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3. 동일 단체 소속 수영장 1일 이용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아래 기재 사설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 정도에 비례하여 사설이용료 증감 가능						

※ 삭제

※ 현행과 같음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가. 대 관 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백년홀)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전시실(백년갤러리)	1일	30,000	

※ 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이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이용료의 감면(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	신 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30%	신 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변 경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의 지급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이하 "일반용봉투"라 한다)의 무료 제공
3. 사용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로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1564호,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예우,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예우)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의 시책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 입장료 · 주차료 · 수강료 등을 감면 해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관련 사항

○ 내　　용 :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2조제3항 관련)

○ 주요내용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확대 지원(변경, 신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의 이용료 감면 지원(신설)

<이용료 감면 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감면대상 : 월 회원으로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감 면 율 : 가.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 ⇨ 30%(신설)
나.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 ⇨ 50%(변경)
다.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50%(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 개정건은 비예산 사업임

○ 달성문화센터 이용객 중 다자녀가정 이용객 수의 집계가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비용추계 어려움

4. 작성자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석경목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70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1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신설된 「달성 테크노 생활체육광장」을 조례에 체육시설을 추가 반영 및 파크골프장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정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안)[별표 1] 신설 달성테크노 생활체육광장,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 현행화

○ 안)[별표 3] 국민체육센터 장기등록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내용 삭제 및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사용료 상한액 및 감면 내용 정비

○ 안)[별표 5] 사용료의 감면 항목 중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비율 정비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달성테크노 생활체육광장, 파크골프장 등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3개월 이상의 장기등록자 이용료 감면 조항 삭제, 수영장 시설의 공휴일 휴관 규정 추가 등 시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 6.30.] 제정의 취지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 개정규정의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허가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군민운동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군민체육관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달성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생활체육광장, 통합놀이터**
논공축구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구지축구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화원테니스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	- 테니스장
현풍테니스장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화원게이트볼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게이트볼장
다사체육공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창체육공원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곡체육공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성스포츠파크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화원진천천파크골프장	화원읍 구라리 1400	-파크골프장
논공위천파크골프장	논공읍 위천리 648	-파크골프장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논공달성보파크골프장			논공읍 남리 1	-파크골프장
가창파크골프장			가창면 옥분리 778-7	-파크골프장
유가한정파크골프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구지평촌파크골프장			구지면 평촌리 1-43	-파크골프장
강변체육시설	낙동강	달성강변야구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야구장, 선수대기실
		하빈지구 체육시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금호강	금호강변 체육시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1. 달성국민체육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 (13세~18세)			초등 (6세~12세)			유아 (5세 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회 이용 요금		
수영장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 이용 요금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100,000	3,200		3,000	2,000	1,000

비 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 이용시간

구 분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헬스장	06:00 ~ 21:00	06:00 ~ 18:00	09:00~18:00	휴 관
수영장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 (13세~18세)			초등 (6세~12세)			유아 (5세 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일 이용 요금		
수영장 (월)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체육 문화 강좌	어린이 단체강좌				성인 단체강좌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80,000	60,000	50,000	30,000	70,000	50,000	40,000	20,000

네버랜드 (회)	36개월 이상~10세 이하	8,000	개인사물함(월)	대	중
				3,000	2,000

비 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감면율	대 상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 5.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감면	1. 어린이 20인 이상 10% 할인

※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12세 이하를 말한다.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이용시간

수 영 장	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06:00~21:00	06:00~18:00	09:00~18:00	휴관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구 분	감면율(할인율)	비 고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전액면제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전액면제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0%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 이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50%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3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생 략)		
(추가) 달성테크노폴리스생활체육광장		
(생 략)		
진천천파크골프장	화원읍 구라리 188-1	
논공위천파크골프장	논공읍 위천리 651	
달성보파크골프장		
(생 략)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1. 달성국민체육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만19세이상)			중.고생(만13~만18세)			초등(만6~12세)			유아(6세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수영장(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헬스장(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 입장요금	사물함(월)	대	중	소

비 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 3개월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음 4. 단체 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이용시간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현행과 같음)		
달성테크노폴리스생활체육광장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생활체육광장, 통합놀이터
(현행과 같음)		
화원진천천파크골프장	화원읍 구라리 1400	
논공위천파크골프장	논공읍 위천리 648	
논공달성보파크골프장		
(현행과 같음)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1. 달성국민체육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19세이상)			중.고생(13세~18세)			초등(6세~12세)			유아(6세이하)	아쿠아로빅(전체연령)		1일 이용요금		
수영장(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헬스장(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 이용요금	사물함(월)	대	중	소

비 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100인 이상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 이용시간

구 분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헬스장	06:00~ 21:00	06:00~ 18:00	휴관	휴관
수영장			09:00~ 18:00	
※ 고객의 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 18세)			초등 (만6~12세)			유아(6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수영장(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체육문화강좌	어린이 단체강좌					성인 단체강좌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네버랜드(회)	관내 어린이 (36개월 이상~만10세 이하)		4,000	개인사물함 (1개월)				대	중						
	관외 어린이 (36개월 이상~만10세 이하)		8,000												
비고	1.~2(생략)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할인) 4. (생략)														

□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감면율	대 상
50%감면	1 ~3.(생략) 4. 다자녀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5. (생략)
10%감면	1. (생략)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이용시간

구 분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헬스장	06:00~ 21:00	06:00~ 18:00	09:00~ 18:00	휴관
수영장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 (13세~18세)			초등 (6세~12세)			유아(6세 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일 이용 요금		
수영장(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체육문화강좌	어린이 단체강좌					성인 단체강좌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네버랜드(회)	36개월 이상~10세 이하		8,000	개인사물함 (월)				대	중						
비고	1.~2.(현행과 같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할인/ 100인 이상20%) 4. (현행과 같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감면율	대 상
50%감면	1~3. (현행과 같음) 4.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 5. (현행과 같음)
10%감면	1. (현행과 같음)

※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12세 이하를 말한다.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이용시간

수영장	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생략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구 분	감면율(할인율)	비고
(생략)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50%	
(생략)		

수영장	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현행과 같음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구 분	감면율(할인율)	비고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30%	변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변경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의 지급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이하 "일반용봉투"라 한다)의 무료 제공
3. 사용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관련 사항

○ 내　　용 : [별표 5] 사용료 감면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사용료 감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자녀 2명이상 가정 지원(변경)

<사용료 감면 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감면대상 : 월 회원으로 수영장, 헬스장 사용하는 다자녀가정

○ 감 면 율 : 가.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 ⇨ 30%(변경)

나. 다자녀가정 중 3자녀 가정이상 ⇨ 50%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 개정건은 비예산 사업임

○ 체육시설(달성국민체육센터,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자하는 월 회원 중 다자녀가정의 등록 회원수가 및 지역내 다자녀가정의 수가 유동적으로 비용추계 어려움

4. 작성자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팀장 이석철

2024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73호

2. **제 출 일**: 2024년 3월 12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2024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변경 : 100백만 원 증

※ (당초) 금3,212백만 원 →(변경) 금3,312백만 원

- 기관운영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출연 : 변동없음

※ (당초) 금1,357백만 원

- 자체사업비 출연 변경 : 100백만 원 증

· 달성 100대 피아노 : 100백만 원 증*

*대구시 '2024년 우수지역축제 발굴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

※ (당초) 금1,855백만 원 →(변경) 금1,955백만 원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문화콘텐츠의 질적·양적 다양화를 통해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체험 기회를 높이고자 기정 3,212백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3,312백만 원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자체사업중 달성 100대 피아노 사업이 2024년 2월초, 대구시 '2024년 우수지역축제 발굴 지원사업' 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 지원금 1억 원을 반영, 증액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 추진으로 달성의 문화 위상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번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1부.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부.
3. 출연기관 현황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최 재 훈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7~8층
출 연 사업비	○ 추가 출연 금액 : 100백만 원(시 1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4 당초 출연액	2024 1회 추경 증감액	2024년 재원별 최종 출연액			
				계	국비	시비	군비
합 계		3,212	100	3,312	-	100	3,212
인력운영비	1~12월	836	-	836	-	-	836
기본경비	1~12월	521	-	521	-	-	521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200	100	300	-	100	20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9월	150	-	150	-	-	150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1~12월	200	-	200	-	-	200
하빈행복생활문화 센터 운영	1~12월	125	-	125	-	-	125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	150	-	-	15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130	-	130	-	-	130
달성 스토리텔링	1~12월	120	-	120	-	-	120
YES! 키즈존	5월, 10월	350	-	350	-	-	350
문화기획지원	1~12월	180	-	180	-	-	180
달성문화교차로	1~12월	150	-	150	-	-	150
참꽃갤러리 운영	1~12월	100	-	100	-	-	100

출 연 필요성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 거 법 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 업 부 서 의 견 (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산업관계연구원, ‘23. 3.. ~ ‘23. 6.)

- 2023년(2022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1.10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경영관리	58	52	• 리더십 • 경영시스템 • 일자리확대 • 사회적책임
경영성과	42	39.10	• 주요사업 • 경영효율성과 • 고객만족
총 점	100	91.10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4년 자체사업비 출연금 추가 출연으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100백만 원 증액 : 달성 100대 피아노 시비보조금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출연액 <당초> (A)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총 출연액	부서 검토액 (B)	증감액 (B-A)
총 계	3,212	3,312	3,312	100
기관운영비	1,357	1,357	1,357	-
인력운영비	836	836	836	-
기본경비	521	521	521	-
자체사업비	1,855	1,955	1,955	100
달성 100대 피아노	200	300	300	100
달성대구현대미술제	150	150	150	-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200	200	200	-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125	125	125	-
예술자치구역	150	150	150	-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30	130	130	-
달성 스토리텔링	120	120	120	-
문화기획지원	180	180	180	-
달성문화교차로	150	150	150	-
YES! 키즈존	350	350	350	-
참꽃갤러리 운영	100	100	100	-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68-4235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 5. 17. 등기					
임원 (23.10.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김철식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도원길	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방성택	대구음악협회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정대용	경산시립예술단 단무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서재혁	달성군 문화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도창곤	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	2022.8.23.~2024.8.22		
	감사	김수정	달성군 문화예술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12.31 기준 (백만원)	자산	8,706
	예산액	7,020	7,070	8,083		부채	1,412
	지자체 지원액	4,782	4,553	5,704		자본	7,294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 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